

■ [공간지원] 공모사업 세부안내

창작공간 임차료 지원

사업내용

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

지원규모

- 건당 (최대) 3백만원 / 20건 내외 선정 예정
- 6개월 (2026년 6월~2026년 11월)의 순 임차료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
- * 순 임차료 :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부가세, 관리비를 제외한 순 임차 금액

지원 예시	예1) 월 임차료 40만원×6개월 = 240만원 지원
	예2) 월 임차료 60만원×6개월 = 360만원 중 300만원 지원
	예3) 월 임차료 100만원×2개월 = 잔여 계약 6개월 미만 지원 불가

※ 선정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지급가능하며 부가세 제외

※ 1인(단체) 당 최대 3년까지 연속지원 가능

신청자격 및 지원대상

[지원 대상]

- 경기도 소재 창작공간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예술 활동 기반의 경기도 소재 예술인 및 예술단체 (전문예술단체·법인, 사업자, 협동조합 등)
 - 작업실, 연습실, 공동 작업공간 등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대여 시
 - 사업 기간 내 잔여 임차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
 - 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최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, 창작·자립 활동 등을 목적으로 사용·운영되어야 함
- ※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명과 지원사업 신청인의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
- ※ 최초 계약 이후 자동 연장된 경우, 연장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임대인 확인서 추가 필요

[지원 대상 제외]

- 제3자에게 대여·대관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공간 (유·무상 여부 관계없이 제외)

[정산 및 증빙 조건]

- 정산 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증빙 필수,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수

심의방식

- 2단계 심의 : 1차 행정심사 → 2차 서류심의
- 서류심의 시 논의를 통해 현장실사를 추가할 수 있으며, 현장실사 후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 가능
- 가점 사항 : 사업자등록증 우대(*가산점 +5점)
(단,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등록증명서여야 함)

필수

제출자료

- 지원신청서
- 1)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- 2) 창작공간 활용계획서
- 3) 창작공간 현황 자료
- 4) 개인 / 단체의 소개서
- 5) 개인 / 단체의 실적자료 (최근 3년 활동 실적)
- 6) 단체: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사본
- 7) 임대차계약서 (**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계약서만 유효**)
※미첨부시 행정심사 탈락
※최초 계약 이후 자동 연장된 경우, 연장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임대인 확인서 1부 추가 첨부(임대인, 임차인 성명·서명 필수, 임대차관계 유지 기한 명시)
- 작성 시 확인사항
- 파일명: 창작공간 임차료_ 지원자(단체)명

유의사항

- 유사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지자체,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,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하기 때문에, 교부신청 시 사업 내용 및 예산변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(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변동 발생 시 사업포기 및 지원금 반환 조치)
-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의 사업 신청 정보(단체 대표자, 소재지 등)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, NCAS 신청 정보를 기준으로 심의합니다. 또한, 개인 계정으로 단체 지원을 신청하거나 단체 계정으로 개인 지원을 신청하는 등 신청주체가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,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선정된 예술인은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공유회 등 현장방문이 필요할 시 필히 협조하고 의무참석해야 합니다.

문의

-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(031-231-0868)
- 문의시간 : 평일 10시~17시 (점심시간 12시~13시 제외)

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

사업내용 ○ 민간창작공간(전시장, 공연장 등) 기획프로그램 지원

지원규모 ○ 평균 2천만원 / 10건 선정 예정

신청자격 ○ 경기도 소재 민간창작공간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공간에서 예술활동을 기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기도 예술단체
- 최소 2026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창작공간의 사용이 가능해야 함

세부 ○ 민간창작공간(전시장, 공연장 등) 기획프로그램 지원

지원방향 - 창작자 중심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(전시, 공연, 교육, 워크숍, 포럼, 행사 등)
- 기획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상주인력 인건비, 시설비 책정 불가
- 2026년 6월~11월까지 프로그램 기간 인정

심의방식 ○ 3단계 심의 : 1차 행정심사 → 2차 서류심의 → 3차 인터뷰심의
○ 심의기준 : 신청자의 역량, 계획의 구체성·충실성, 공간활용의 적합성, 사업결과의 파급·기대효과 등
○ 서류심의 시 논의를 통해 현장실사를 추가할 수 있으며, 현장실사 후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 가능

필수 ○ 지원신청서

제출자료 1) 단체소개서
2) 공간 소개서
3) 기획프로그램 계획서
4)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○ 작성 시 확인사항

- 파일명: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_지원자(단체)명
-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
- 용량 50MB 이하의 PDF 파일 1건으로 변환하여 저장
-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
※ 지원신청서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.
※ 예술인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, 경기도 주소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.

유의사항

- 유사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지자체, 지역문화재단,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,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하기 때문에, 교부신청 시 사업 내용 및 예산변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(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변동 발생 시 사업포기 및 지원금 반환 조치)
-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의 사업 신청 정보(단체 대표자, 소재지 등)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, NCAS 신청 정보를 기준으로 심의합니다. 또한, 개인 계정으로 단체 지원을 신청하거나 단체 계정으로 개인 지원을 신청하는 등 신청주체가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,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선정인은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공유회 등 현장방문이 필요할 시 필히 협조하고 의무참석해야 합니다.

문의

-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(031-231-0868)
 - 문의시간 : 평일 10시~17시 (점심시간 12시~13시 제외)